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후환경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기후환경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구분)제3항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원활한 지원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존속기한)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
□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. 8. 1일부터 8.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8. 28일 조례 ·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 할 필요가 없어 존속기한 항을 삭제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·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3120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9. 1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후환경과장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구분)제3항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·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존속기한) 삭제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(붙임참조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3. 8. 1.~8. 21.)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</u> <u>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</u> <u>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【 관 련 법 령 】

□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의2(지원금의 관리 등)

-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.
-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(出捐)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 [시행일: 2023. 5. 16.] 제16조의2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

- ① 지방자체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